

행정조치(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



행정조치	위반내용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 중지 및 유통·판매중인 제품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경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공급·판매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대기환경보전법 제89~94조)



벌칙	위반내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경우(수입 포함)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판매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판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 중지, 제품 회수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경우
	▶ 제조·판매·사용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판매한 경우
	▶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검사받은 제품임을 미표시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 업체명, 주소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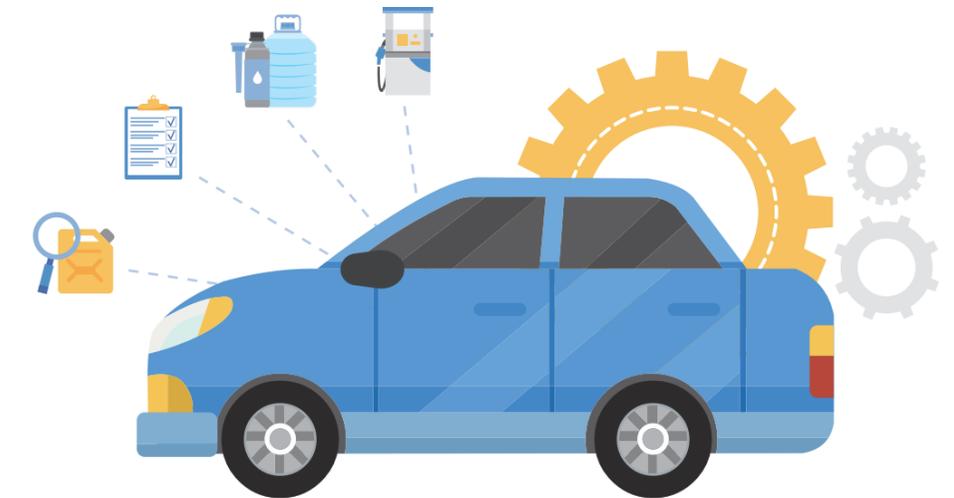
	기관(부서)	연락처	
첨가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 560-7613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043) 240-7975	
촉매제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 560-7614
		한국환경공단	032) 590-4469
	서울/경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02) 958-494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 2284-165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27
	대전/충청	한국화학연구원	042) 860-7744, 7729
한국석유관리원		043) 240-7940	

2022. 04

www.me.go.kr/mamo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Tel. 031-481-1378 Fax. 031-481-1436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 제도란?



- 자동차연료(휘발유·경유)의 성분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환경품질등급(5개 등급 ★)을 제조(수입)사별로 평가·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제조(수입)사의 자율적인 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자동차연료 첨가제란?



- 자동차의 성능향상 또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연료의 1% 미만으로 첨가하고, 가짜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 첨가제의 종류 :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유동성향상제, 윤활성향상제 등



촉매제(요소수)란?



-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SCR)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 주성분이 요소와 물(Urea+Water)로 되어 있어 요소수라고도 함

※ 질소산화물은 기관지염,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인간과 자연에 많은 피해를 주는 광화학 스모그와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임

※ 촉매제는 배출가스저감장치(SCR)의 정상 작동으로 배출가스 기준 준수를 위하여 사용됨



첨가제 및 촉매제 공급·판매·사용자 준수사항



- 공급·판매자:** 첨가제 및 촉매제 공급·판매자는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공급·판매하여야 함
- 사용자:** 첨가제 및 촉매제 사용자는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촉매제는 주기적으로 보충 하여야 함

▶ 적합 첨가제 및 촉매제 확인 방법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
www.nier.go.kr/tprc →
정보/알림 →
연료/첨가제/촉매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면에 있는 아래의 문구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장의 명칭)
제○○호”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수입사 준수사항



- 제조·수입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함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함
- 시험의뢰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

※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L 이하의 용기에, 경유용 첨가제는 2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함

※ 첨가제 제조·수입자는 최대 첨가비용을 용기에 제시하여 사용자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야 함

☎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표시방법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기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검사를 한 검사기관의장의 명칭) 제○○호”로 표시
표시크기	제품명 글자 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
표시색상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9조

새롭게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안내(2021.12.30 시행)



- 제조·수입업체 검사 합격증 유효기간 설정**
- **(내용)**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 확인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함
-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수입 가능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

- 제조·수입업체의 변경신고 의무화**
- **(내용)**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함
- **(경과조치)** 종전에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중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신고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1항